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 다.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3조)
- 라.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 마.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5조)
- 바.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등 (안 제6조)
- 사.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 아.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8조)
- 자. 의견청취 등 (안 제9조)

차.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 제10조)

카.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등 (안 제11조)

타.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조 례 안 : 붙임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그 밖에 지적제조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